

2026년 제3차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1일

호 남 권 질 병 대 응 센 터 장

1. 선발개요

① 응시자 개요(총 1명 - 기술연구원)

응시 분야 (근무지)	등급	인원	자격기준 및 담당업무	계약기간
호남권 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 (광주 광산구)	기술연구원 (기간제)	1	■ 자격기준 - 식품·영양 관련 전문 학사 이상 - 영양사 면허 소지자 우대 ※ 주 4일 이상 광주, 전남, 전북, 충청, 제주 지역 등 근무(출장) 가능한 자 ■ 담당업무 - 국민영양조사 호남권 현장조사(영양) 업무에 관한 사항 - 기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관련된 사항	채용일 ~ '28. 2. 11. (육아휴직 대체)

※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('26. 10. 12.) 기준으로 판단

2.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

① 응시 자격(원서접수 마감 기준)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「공무원 임용시행령」 제51조 등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만 60세 미만인 자
- 식품·영양 관련 전문 학사 이상

③ 우대사항(원서접수 마감 기준)

- 법정가점 대상자(증빙자료 첨부 필수)

구 분	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법」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~10%

※ 법정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때에만 적용함.

단,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일 때 채용 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

3. 보수 및 근로조건

○ 보수 : 질병관리청 「2026년 연구원 보수기준표」에 따름

- 기본급(월) 한계액

구 분	하한액(1호봉)	상한액(25호봉)
기술연구원	2,203,500원	3,606,400원

※ 「질병관리청 공무원 등 근로자 보수체계」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급식비, 명절상여금 지급 예정(그밖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)

※ 초임호봉 확정 시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정」의 유사경력 인정표와 호봉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호봉 확정 예정

※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34조에 따라 출장비 지급 예정

○ 계약기간: 임용일 ~ '28. 2. 11.까지

○ 근무시간: 09:00~18:00(휴게시간 1시간 포함, 주 40시간, 주5일 근무)

※ 3박 4일 조사기간 동안은 근무일정(06:30~15:30) 등 변동 가능

○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」 제29조 5항에 따라 채용 후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, 부서장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계약 종료할 수 있음

4. 전형방법

① 서류전형

서류전형				
○ 적극적 서류전형(채용인원의 3배수)				
계	평가점수			법정가점
	지원분야 경력	자격증 및 면허증	분야 적합성	
100점 + 가점	20점	20점	60점	5점, 10점
- 채용인원 범위 내에 든 경우라도,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-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 -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				

② 면접전형

면접전형						
○ 면접전형(최종합격자 1배수, 예비합격자 2배수)						
계	평가점수					법정가점
	정신자세	발전가능성	전문지식	성실성	논리성	
100점 + 가점	20점	20점	20점	20점	20점	5점, 10점
- 평가점수의 각 항목은 최고 20점부터 최하 1점까지 부여함 - 채용인원 범위 내에 든 경우라도,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,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평정된 자 중 예비 합격자 (2배수) 결정 가능 -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중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, 없을 시 면접심사 재진행 - 단,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						

5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
모집공고 및 원서접수	'26. 10. 1.(목) ~ 10. 12.(월)	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, 나라일터 등 - (원서접수) 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 ※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
서류전형	'26. 10. 16.(금)	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시 ※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
서류합격자 발표	'26. 10. 21.(수)	
면접전형	'26. 10. 27.(화)	
최종합격자 발표	'26. 11. 3.(화)	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임용 예정일	'26. 11. 9.(월)	- 개별통보 ※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 예정일 변경될 수 있음

6. 원서접수

- 접수 기간: '26. 10. 1.(목) ~ '26. 10. 12.(월)
- 접수 방법: 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 접수 (<https://kdca.fairy.im>)
(기존 우편 등의 방법으로는 접수 받지 않음)



<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 QR>

※ 모든 서류는 질병관리청 연구원 전문 채용시스템 접수를 이용하여
작성하거나 제출(시스템 접수 진행 시 첨부파일 등록)

7. 제출서류

① 공통 제출서류(필수 제출)

제출서류		비 고
1	응시원서 1부	▶ '채용시스템'에 직접 입력
2	자기소개서 1부	
3	성적증명서 1부	▶ 증명서 모두 파일 등록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) * 외국대학 졸업자는 서류 접수 시 번역본 제출 가능,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전까지 공증본 제출 필수
4	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	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[첨부1]	▶ '채용시스템'에 첨부파일 등록
6	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[첨부2]	
7	취업제한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 [첨부3]	
8	확인서 1부 [첨부4]	

② 해당자 제출서류

제출서류		비 고
1	경력(재직) 증명서 1부	▶ '채용시스템'에 파일 등록 (담당업무 및 발급자 연락처 필수 기재) * 담당업무 미기재 및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직무 분야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,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* 외국기업 경력 증명서 제출 시 번역본 제출 가능,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전까지 공증본 제출 필수
2	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	▶ '채용시스템'에 파일 등록 ※ <u>컴퓨터활용능력 1·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(구 1급 포함, 구 2·3급 불 인정) 자격증이 인정</u> 되며 제출하지 않은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※ 영양사 면허증 사본 제출
3	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	▶ 주민등록초본은 병역 사항 기재
4	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	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 필) 첨부

8. 안내 및 유의사항

- 시험과 관련하여 미확인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,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
-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)로 통보 예정
-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음
- 시험 시행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추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
- 채용시스템으로 제출된 응시서류의 반환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의거해 반환하지 않음
- 임용예정일 '26. 11. 9.(월)
- 기타 문의처: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채용담당자(☎062-221-4115)

[첨부1]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 [별지 제6호서식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	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관리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폰번호, 전자우편, 학력·경력·자격·면허사항, 외국어성적·논문·수상실적 등 자격 및 우대요건 등 채용 시 제출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해당하는 사항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준영구 ※ 다만, 채용 불합격 시에는 채용 공고일 기준 3년간 보관 후 폐기

※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

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

공무직·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[]공무직 []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☐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☐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☐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[]에 체크>

1. <u>공직자</u> 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 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[] 해당 [] 비해당
2. ‘ 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 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비해당: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해당: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	[] 해당 [] 비해당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	[] 해당 [] 비해당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[] 해당 [] 비해당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[] 해당 [] 비해당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	[] 해당 [] 비해당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’ 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[] 해당 [] 비해당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<u>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u>	[] 해당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<u>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u>	[] 해당

※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년 월 일

지 원 자

(서명 또는 인)

확 인 서

응시분야	응시등급	생년월일	성명

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 채용 관련 합격취소 사항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.

1. 내·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강요 및 청탁한 경우
2.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
3.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
4. 대리 면접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면접에 응시한 경우
5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
6. 병역, 가점 등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한 경우
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

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의 채용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것에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